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나811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김훈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장성관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2.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265917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E에 대하여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부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마련하여 임대인인 E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그 아들인 F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임차인 명의만을 D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D이 아니라 피고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아들인 F이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빌려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당사자는 D이 아니라 F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D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처분문서는’ 앞에 “계약명의자 아닌 사람이 계약체결에 관여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피고가 아니라’를 ‘피고 또는 F이 아니라’로, 제6행의 ‘기재되어 있다.’를 ‘기재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은 D이 직접 임대인인 E와 체결하였다.’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증언하였다.’ 다음에 “또한, 증인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갱신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니라 D과 얘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O(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 E,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도 D과 함께 자리에 참석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E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이 E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D과 F 및 그 자녀들이다. 한편, F은 D과 함께 위 부동산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F이 계약의 체결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바.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를 ‘피고는 제1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로 고치고, 제15행의 ‘96다36647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을 추가한다.

사.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에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갱신된 후 나머지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 2019. 8. 13.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현선헤, 판사 백규재